

**APEC TEL MRA 동향 및
한-EU FTA 이행방안 연구**
(MRA/FTA 추진성과 및 향후 보완사항 고찰)

RRA 

국립전파연구원

www.rra.go.kr

APEC TEL MRA 동향 및
한 - EU FTA 이행방안 연구
(MRA/FTA 추진 성과 및 향후 보완사항 고찰)

2011. 7.

제 출 문

본 보고서를 「국가간 상호인정협정 체결 지원에 관한 연구」 과제의 수시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1. 7. 10

연구책임자 : 이경희(녹색인증제도과 국제인증협력담당)

연 구 원 : 신금철(녹색인증제도과 국제인증협력담당)

박정민(녹색인증제도과 국제인증협력담당)

요 약 문

본 APEC TEL MRA 동향 및 한-EU FTA 이행방안 연구 (MRA/FTA 추진 성과 및 향후 보완사항 고찰)는 방송통신기자재 분야의 상호인정협정 활동에 관한 APEC TEL MRA의 최근 동향과약, 상호인정협정을 위한 주요 논의내용 및 금년 7.1일 발효된 한-EU FTA의 이행방안 등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제2장에서는 APEC TEL MRA의 명확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주요 내용 및 조직 구조 등에 대하여 기술하였으며 아울러 최근 개최된 제43차 회의(11.3) 내용과 우리나라의 그동안의 활동 성과와 대응 방향을 자세하게 소개하여 MRA활동에 대한 전체적인 현황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제3장에서는 한-EU FTA의 방송통신분야 체결내용과 이행을 위하여 마련한 우리나라의 조치 내용을 자세히 기술하여 시행에 착오가 없도록 하고자 하였다. 세부내용으로 체결내용의 근간이 되는 적합성평가 상호인정 대상기자재, 양국의 적합성평가 절차 및 FTA의 효력발생과 관련한 내용은 물론 한-EU FTA를 고려한 전과법 개정 내용, 협의 중인 한-미 FTA와의 비교 등을 중심으로 기술하여 FTA시행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 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제4장에서는 MRA 및 FTA 추진과제 및 향후 추진방향을 모색하고자 APEC TEL MRA 분야와 한-EU FTA의 효율적 이행 방향에 대하여 연구하였으며 제5장에서는 향후 우리나라의 MRA/FTA 추진전략에 대하여 제시해 보았다. 전체적으로 본 연구는 그동안의 APEC TEL MRA 추진성과를 짚어보고 향후 보완하거나 새롭게 준비해야하는 사항을 고찰하고자 하는 목적과 새롭게 시행하는 한-EU FTA의 명확한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목 차

제1장 서론	3
제2장 APEC TEL MRA 동향	5
제1절 APEC TEL MRA 및 제43차 회의 개요	5
제2절 우리나라의 APEC TEL MRA 성과 및 대응	13
제3장 한-EU FTA 이행방안	21
제1절 한-EU FTA 체결 내용	21
제2절 한-EU FTA 이행 방안	28
제4장 MRA 및 FTA 과제 및 향후 추진 방향	42
제1절 APEC TEL MRA 전개	42
제2절 한-EU FTA 이행	43
제5장 결론(MRA/FTA 추진 전략)	47
참고문헌	50

표 목 차

[표 1] APEC 회원국 현황.....	6
[표 2] 국가별 MRA 체결 현황.....	10

그 립 목 차

[그림 1] APEC 운영체계.....	6
[그림 2] APEC TEL MRA-CA 단계별 구분.....	9
[그림 3] APEC TEL MRA-CA 적합성 평가기관 지정 및 승인 절차.....	9

제1장 서론

국가는 소비자의 안전 및 국가 기간통신망의 보호를 위하여 역내에서 유통되는 방송통신기기에 대하여 일정한 수준의 기술기준을 강제화 하고 있다. 이러한 적합성평가제도의 기술기준 및 표준화를 통하여 자국민 보호는 물론 관련 산업을 발전시켜 오고 있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세계화, 개방화에 따라 다자간 자유무역 및 지역 간 자유무역이 활성화되면서 각국은 자유무역의 선행조건인 각국의 기술 장벽을 제거하고 교역을 촉진하기 위해 자유무역 활성화를 위한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 WTO) 및 지역간 경제협력기구인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PEC), 유럽연합(European Union : EU), 북미자유무역협정(North America Free Trade Agreement : NAFTA) 등과 같은 경제블록을 형성 하였다. 그리고 경제 블록 간, 개별 국가 간 기술장벽 제거에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Mutual Recognition Agreement : MRA)을 이용하고 있다. APEC에서도 방송통신기기 분야 등에 대하여 역내 회원국의 경제협력 및 장벽제거를 위하여 MRA를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국은 MRA를 추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제적 기술기준 및 선진적 인증제도의 마련에 전력을 다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EU는 MRA 상대국의 기술기준 및 인증제도에 의하여 지정된 시험기관, 이러한 시험기관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APEC TEL MRA 1단계) 및 인증기관, 이러한 인증기관에서 발행한 인증서(APEC TEL MRA 2단계)만을 상호 인정 하는 APEC TEL MRA 방식과는 조금 다르게 상대국 기술기준에 의하여 상대국의 승인 없이 EU가 지정한 역내의 시험 및 인증기관이 발행한 시험성적서 및 인증서만을 가지고 제조자가 적합함을 스스로 선언(Supplier's Declaration of Conformity : SDoC)하면 별다른 조치 없이 상대국에 수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EU는 한층 개방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EU와 별도의 MRA없이 이러한 내용을 근간으로 무역조건에

합의(한-EU FTA) 하였으며 양국 의회의 승인을 거쳐 금년 7.1일부터 발효 중에 있다. 이는 국가주도의 강제 인증제도를 민간 자율주도형으로 대폭 개방하여 제조 및 수입업체 등 인증 수요자의 선택의 폭을 넓힘으로서 경쟁을 통한 인증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킴과 아울러 방송통신분야 국제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가 미국, 캐나다, 칠레, 베트남 등 주요 교역국과 체결하고 있는 APEC TEL MRA의 주요 추진업무 및 동향을 살펴보고, 또한 MRA에 대한 우리나라의 기본 입장, 시행현황 및 향후 추진방향 등을 고찰하였으며 또한 거대시장인 EU와 체결한 방송통신분야 FTA에 대한 이행방안 등을 연구하여 자세히 소개하였다

제2장 APEC TEL MRA 동향

제1절 APEC TEL MRA 및 제43차 회의 개요

1. APEC TEL MRA

가. APEC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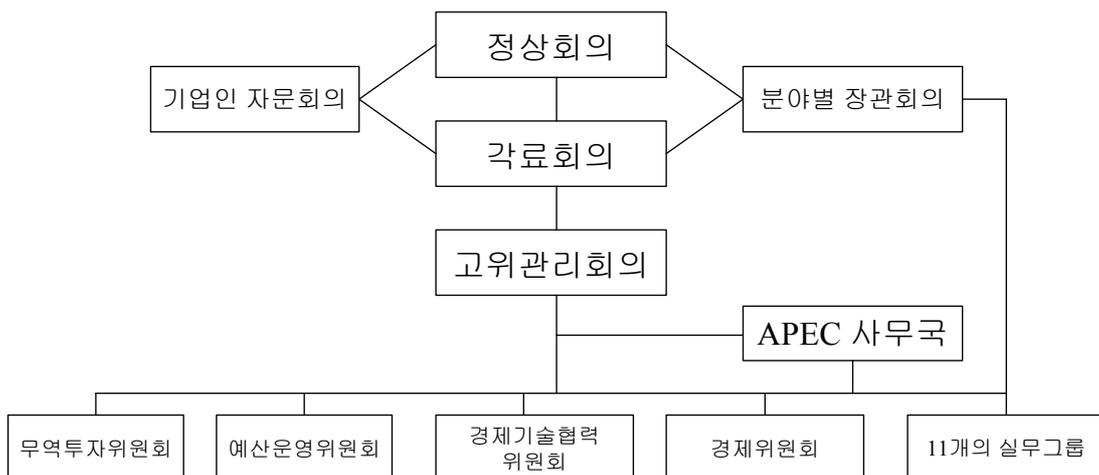
탈 냉전시대를 맞아 세계질서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범 세계주의(globalism)와 지역주의(regionalism)의 현상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었다. 특히 유럽연합(EU),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 유럽과 북미의 지역주의의 심화현상이 가속화되면서 동아시아지역에서도 이러한 지역주의 협력체에 대응하고자 태평양지역 경제협력을 위한 정부간 경제협력기구인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 APEC)를 구성하게 되었다.

APEC은 1989.11월 호주 캔버라에서 한국,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아세안 6개국(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브루나이) 등 12개국이 아·태지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공동의 번영을 위한 협의체로 출범하여 1993.11월 시애틀에서 제1차 정상회의를 개최하였다. 이후 중국, 멕시코, 칠레, 베트남, 러시아 등이 가입되어 현재 아·태지역 21국이 가입하였다. APEC는 역내의 안정과 번영의 달성을 위하여 역내·세계경제의 도전에 공동대응, 역내 재화·용역·자본의 이동을 촉진하기 위한 무역·투자 장애 제거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표 1] APEC 회원국 현황

시 기	가 입 국
창설('89.11)	한국,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아세안 6개국(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브루나이) : 12개국
제3차 각료회의('91.11)	중국, 대만, 홍콩 : 3개국
제5차 각료회의('93.11)	멕시코, 파푸아뉴기니(PNG) : 2개국
제6차 각료회의('94.11)	칠레 : 1개국
제7차 각료회의('98.11)	러시아, 베트남, 페루 : 3개국

APEC은 매년 1회 정상 및 각료회의에 의한 정책협의, 정책협의의 구체적인 행을 위한 고위관료회의(Senior Officials Meeting: SOM)로 운영되고 있다. 고위관료회의는 산하에 사무국과 무역투자위원회(Committee of Trade and Investment: CTI), 예산운영위원회(Budget and Management Committee: BMC), 경제기술협력위원회(SOM Committee on Ecotech: ESC), 경제위원회(Economic Committee: EC) 등 분야별 4개 위원회 및 11개 실무그룹(Working Group)으로 구성되어 전체협의(consensus)를 통한 의사 결정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림 1] APEC 운영체제

정상회의의 결과는 공동선언문 형식으로 발표되며 각료회의는 고위관리회의(SOM)의 건의를 승인하고 지침을 제공하며 세계경제 및 역내 경제협력을 위한 기본방향을 논의한다. 각료회의는 13개의 분야별 장관회의를 통하여 이루어지며 장관급 차원에서의 분야별 협력사업이 관련 실무그룹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논의되게 된다. 13개 장관회의는 통상, 재무, 중소기업, 방송통신, 인력개발, 관광, 환경, 교통, 에너지, 과학기술, 교육, 여성, 해양 등이다. 또한 고위관리회의(SOM)는 정상회의 주최국에서 연 3회 개최하며, 분야별 위원회 및 11개 실무 작업반의 진행상황을 검토하여 정상 및 각료회의에 보고 하게 된다.

실무그룹(Working Group)은 방송통신(Telecommunications & Information Working Group : TEL), 교통, 관광, 무역진흥, 산업과학기술, 해양자원보전, 수산, 농업기술협력, 에너지, 중소기업, 인적자원개발 분야의 전문가 그룹으로 관련 상위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APEC이 보다 실질적인 협력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그 외 기업인 자문회의(ABAC Business Advisory Council: ABAC)는 1995년 오사카 APEC 정상회의의 합의에 의하여 1996년 4월 출범되었다. 이 회의는 민간 부문의 의사를 직접 반영하기 위하여 도입되어 매년 APEC 정상회의에 앞서 기업인 자문회 위원과 APEC 정상들과의 간담회(ABAC Dialogue with Leaders)를 갖고 정상들에게 민간분야의 관심 및 요구사항을 전달하게 된다.

방송통신기기 국가간 상호인정협정(Mutual Recognition Agreement : MRA)이 논의되고 있는 방송통신(Telecommunications & Information Working Group : TEL) 실무그룹은 자유화 운영그룹(Liberalization Steering Group : LSG), 보안 및 번영 운영그룹(Security Prosperity Steering Group : SPSG), ICT 개발 운영그룹(Development Steering Group : DSG)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방송통신기기 국가간 상호인정협정(MRA)은 자유화운영그룹(LSG) 소속의 MRA Task Force Team(TFT)에서 추진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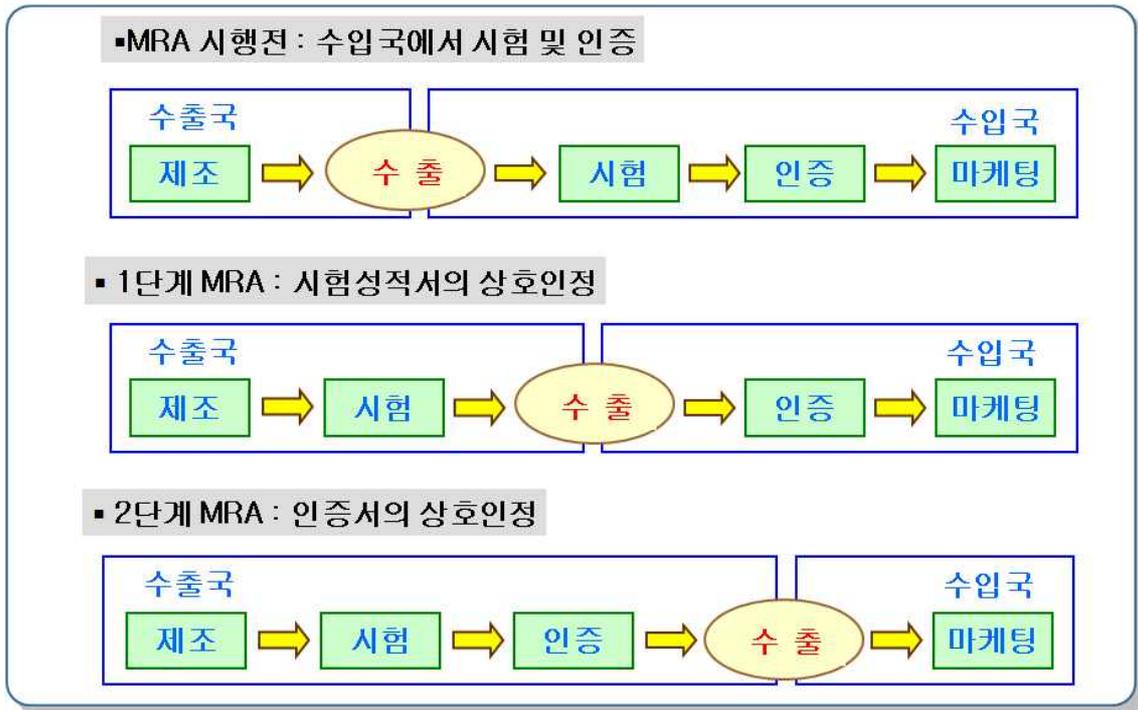
나. 방송통신 분야 국가간 상호인정협정(APEC TEL MRA)

1995년 APEC 정상회의는 역내 방송통신기기 적합성평가에 대한 MRA 모델을 개발하여 시행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후 1998. 6월 제 3차 방송통신 장관회의에서 방송통신기기 APEC TEL MRA 기본안이 승인됨에 따라 회원국들은 1999.7.1부터 회원국 다자간 또는 양자간에 MRA 협정문에 의하여 MRA를 체결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1999년 7월 1단계 MRA에 참여를 선언한 이후로 현재까지 미국, 캐나다, 칠레, 베트남 등 4국과 법적 구속력 있는 서신을 교환방식으로 1단계 MRA를 체결하였으며, 싱가포르, 일본 등과 APEC TEL MRA 체결을 협의해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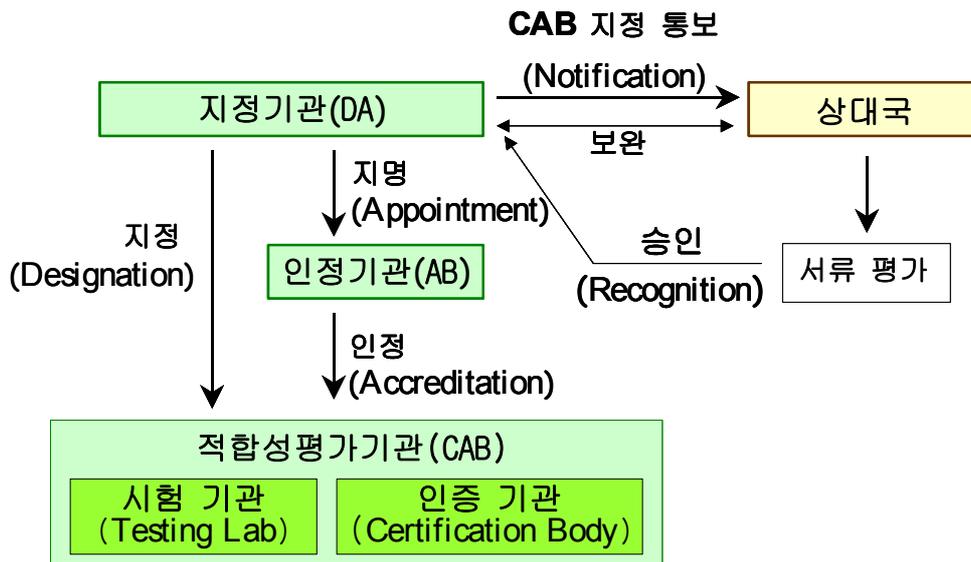
APEC TEL MRA는 유선, 무선 및 정보기기 등 방송통신기기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유·무선기기 기술기준은 물론 전자파적합성(EMC)과 전기 안전기준이 적용된다. 이 경우 적합성평가기관 지정을 위한 인정기관, 적합성 평가를 위한 시험 및 인증기관의 자격조건 및 지정 등은 ISO/IEC의 가이드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APEC TEL MRA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프로젝트는 3가지로 시험 성적서(1단계) 및 인증서(2단계)를 상호국간 인정하는 방송통신기기 적합성 평가에 관한 상호인정협정(Mutual Recognition Agreement on Conformity Assessment of Telecommunications Equipment : MRA-CA), 회원국 또는 상대국간 기술기준을 일치시키는 기술기준 동등성에 관한 상호인정협정(Mutual Recognition Agreement on Technical Requirements : MRA-ETR) 및 사후관리 정보교환과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방송통신기기 사후관리에 관한 상호인정협정(Mutual Recognition Agreement on Market Surveillance of Telecommunications Equipment : MRA-MS)이며, 기타 MRA TF 차원에서 트레이닝 및 워크숍 개최 등이 추진되고 있다. 특히 금번 제43차 MRA TF(중국 항조우, 2011.3.27~3.29)에서는 참여를 희망하는 회원국을 대상으로 하는 MRA 워크숍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APEC TEL MRA의 기존 사업인 MRA-CA는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상호인정하는 1단계와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상호 인정하는 2단계로 구분된다.



[그림 2] APEC TEL MRA-CA 단계별 구분



[그림 3] APEC TEL MRA-CA 적합성 평가기관 지정 및 승인 절차

따라서 APEC TEL MRA-CA는 방송통신기기와 관련한 적합성 평가 절차를 상호 인정하여 수출국이 수입국의 기준에 의한 적합성 평가를 가능하게 하는 일련의 협약으로 무역촉진의 효과를 가지고 있다. 1999년 이후 회원국간 MRA-CA는 활성화되어 1단계 MRA는 미국-호주간 MRA를 비롯한 16건, 2단계 MRA는 미국-일본 MRA를 비롯한 5건으로 특히 일본은 우리나라와 1단계 MRA를 체결하고 있는 미국, 싱가포르, 캐나다와 2단계 MRA를 체결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2단계 MRA체결을 위한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표 2] 국가별 MRA체결 현황

구분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싱가포르	대만	홍콩	베트남	칠레	한국
미국		◎ (07.2)	○ (02.6)		◎ (01.3)	◎ (03.10)	○ (99.3)	◎ (05.4)			○ (05.5)
일본	◎ (07.2)					◎ (02.1)					
호주	○ (02.6)				○ (99.7)	○ (99.7)	○ (99.7)	○ (99.7)			
뉴질랜드											
캐나다	◎ (01.3)		○ (99.7)			○ (99.7)	○ (99.7)	○ (02.3)			○ (97.1)
싱가포르	◎ (03.10)	◎ (02.1)	○ (99.7)		○ (99.7)		○ (99.7)	○ (99.7)			
대만	○ (99.3)		○ (99.7)		○ (99.7)	○ (99.7)		○ (99.7)			
홍콩	◎ (05.4)		○ (99.7)		○ (02.3)	○ (99.7)	○ (99.7)				
베트남											○ (06.1)
칠레											○ (08.6)
한국	○ (05.5)				○ (97.1)				○ (06.1)	○ (08.6)	

○ : 1단계 MRA, ◎ : 2단계 MRA

최근 APEC TEL MRA TF에서는 2003. 10. 제28차 회의에서 호주가 제안하여 2004년 4월 APEC TEL이 승인하였던 MRA-ETR 가이드라인(안)에 대한 회원국 간 논의가 있었다. MRA-ETR은 기존 MRA-CA가 원활히 진행된다 하더라도 MRA-CA하에서는 동일 제품에 적용되는 기술기준이 수출국과 수입국 간의 차이로 인하여 각각 시험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논의 되었다. 특히 회원국 간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기술기준에 대해서는 한번 시험으로 협정국 모두에서 수용되도록 하는 기술기준 동등성의 상호인정이 주된 내용이다.

MRA-ETR은 한 회원국의 표준이나 기술기준이 다른 회원국의 표준이나 기술규정의 주된 내용과 일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회원국 간 기준의 동등성을 상호 인정함을 말한다. MRA-ETR로 국가 간 상이한 기술기준 또는 표준을 통일시키는 것이 아니다. 단지, 회원국의 어느 한 기술기준 또는 표준이 다른 회원국의 기술기준 또는 표준과 동일한 부분이 있는 지를 상호 확인하고, MRA-ETR MRA를 체결한 회원국들이 상대국에서 수행한 적합성평가 결과가 동등화된 기술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자국의 기술기준에 따라 수행한 것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즉, MRA-CA에서 수출국의 시험기관은 수입국의 기술기준에 따라서 시험하였지만, MRA-ETR은 수출국의 시험기관이 수출국 기술기준에 따라 시험하여도 수출국의 기술기준이 수입국의 기술기준과 동등함이 서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수입국에서 그 유효성을 인정받게 되는 것이다. 제43차 회의에서는 캐나다에서 작성한 ETR 가이드라인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회원국 간 문안 조율이 마무리되지 못해 차기 제44차 회의(말레이시아, 2011.10.)에서 문안수정 작업을 마무리 할 예정에 있다.

가이드라인의 구성 및 주요내용

1. MRA-ETR소개
 - MRA-ETR의 목적, 효과 등
2. 회원국이 MRA-ETR에 참여하기 위한 제반사항을 준비하는 단계
 - 요청국(requesting economies) 및/또는 수용국(receiving economies)에서 필요한 적절한 행정적 조치 추진 등
 - ※ 바로 MRA-ETR을 이행하기 전에, 발생가능한 문제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출되었으며, 논의 결과 ETR에 참여하겠다고 결정하기 전에 이러한 사항을 정비하고 참여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므로, 아래 3번 항목 전에 위의 2번 항목을 추가하기로 함
 - 자국 법규가 타국의 기술규정 수용을 허가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함
 - 많은 회원국에서 타국의 기술규정 수용하려면 자국의 법령 개정이 필요할 것 같으니, 각국은 이를 먼저 정확히 다듬어 놓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3. MRA-ETR 실행절차
 - 플로우차트, 타임라인, 서식표준템플릿 등
4. 요청국이 수용국에 신청을 제출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및 절차
 - 제안서, 부대문서 등
5. 수용국이 신청서를 고려하고 동등성을 판단하는 가이드라인 및 절차
6. 참여국(participating economies)이 판단한 후에 한 개 이상의 기술규정이 변경되었을 경우 따라야 할 절차
7. 참여국이 제품부적합에 동의한 경우 상대국에 통보하는 절차

MRA-MS는 사후관리에 대한 정보교환 및 사후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회원국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하여, 지난 41차 회의 시 캐나다에서 제안한 사업으로 지난 42차 회의 시 캐나다 주관으로 실시한 사후관리관련 설문조사내용을 설명하였다. 아울러 금년 3월 43차 회의에서는 캐나다가 사후관리 가이드라인 초안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토론을 가졌다. 그러나 가이드라인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를 다음 44차 회의에서 추가로 갖기로 하였다. 이와는 별도로 캐나다는 우리나라에 사후관리 정보 공유 등에 대한 사후관리 MOU 추진을 제안해와 양국은 긍정적 검토와 가능하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MOU체결을 합의하였다.

캐나다가 조사한 사후관리 설문결과는 다수의 국가에서 방송통신기기 사후관리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었다. 사후관리 프로그램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은 국가는 관련 전문 인력 부족 및 장비 부족 등이 원인이었다. 또한 대다수의 국가에서 부적합기기 등에 대한 회원국 간 사후관리 정보 공유 등을 희망하고 있었다.

제2절 우리나라의 APEC TEL MRA 성과 및 대응

1. MRA 추진 성과

가. APEC TEL MRA 참여

우리나라는 1998년 APEC TEL MRA 협정에 서명하면서 MRA 활동에 적극 참여해오고 있다. APEC TEL MRA 이전인 1997년 캐나다와 양자간에 체결한 방송통신기기 1단계 MRA를 1998년 APEC TEL MRA가 발효되면서 양국의 합의에 따라 2001년부터 APEC TEL MRA로 전환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2005년 미국(1단계 MRA), 2006년 베트남(1단계 MRA), 2008년 칠레(1단계 MRA)를 체결하였다. 특히 미국, 캐나다와는 2단계 MRA체결을, 싱가포르, 일본, 호주 및 뉴질랜드 등과는 1단계 또는 2단계 MRA추진을 논의 중에 있다.

나. 한-캐나다 MRA

양국은 1997년 1월 10일 APEC TEL MRA 시행 이전 별도의 협정문에 의하여 방송통신기기 적합성평가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했다. 내용은 시험기관의 상호 인정 및 그 시험기관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를 상호 인정하는 것으로 이후에 시행된 APEC TEL MRA 1단계와 내용면으로 유사하여 양국은 2001년부터 양국간 MRA를 APEC TEL MRA로 전환하였다. 2011년 6월 현재 양

국의 MRA 시험성적서 발행 건수(캐나다가 승인한 한국 시험기관 4개, 한국이 승인한 캐나다 시험기관 11개)는 많은 편은 아니지만 한-캐나다 MRA는 방송통신기기 분야에서 한국이 맺은 최초의 MRA로 이후 MRA를 추진의 모델이 되었다.

다. 한-미국 MRA

이 후 한국은 APEC TEL에서 미국과 MRA 체결을 위한 정보교환, 실무 협의 등을 거쳐 2005년 5월 양국간 MRA 서신을 교환함으로써 APEC TEL MRA 1단계를 시행하였다. 한-미 MRA는 국내 방송통신 시험기관 지정 및 관리에 대한 신뢰성을 더욱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방송통신기기의 대미수출에 크게 기여 하게 되었다. 현재 양국에서 지정받은 시험기관의 수는 우리나라(미국에 의하여 승인된 시험기관) 시험기관이 31개, 미국 시험기관(우리나라에 의하여 승인된)이 77개로 MRA 효과는 크게 나타나고 있다.

라. 한-베트남 MRA

한국은 2006년 1월 베트남과 APEC TEL MRA 1단계를 체결하였으며 2011년 5월 대상범위를 유선분야에서 무선 및 전자파적합(EMC) 일부 분야 까지 확대하였다. 대상범위 확대로 양국의 MRA로 효과는 더욱 활성화하고 있다. 베트남 MRA는 동남아 시장 진출의 교두보 확보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마. 한-칠레 MRA

한국은 2003년 2월 한-칠레 FTA가 발효됨에 따라, FTA 협정문에 근거한 MRA 체결을 추진하여 2008년 6월 한국은 유선, 무선, EMC 분야 칠레는 유선분야에 대하여 APEC TEL MRA방식으로 양국간 MRA 체결하였다. 현재까지 양국이 상호인정한 시험기관은 없지만 향후 방송통신기기 확대에 따른 MRA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마. 기타국 MRA

한국은 현재 2005년 8월 체결된 한-싱가포르 FTA에 따라 FTA 협정문에 근거된 양국 간 MRA 시행을 논의 중에 있다. FTA에서 양국은 APEC TEL 1, 2단계 MRA를 체결하도록 합의하였으나 싱가포르측에서 한국의 시험기관 인정 방식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2008년 이후 논의가 사실상 중단되어 왔다. 이후 우리나라는 전파법 개정으로 동 사안이 모두 해결하였으며 2011년 3월 제43차 회의 시 싱가포르는 이를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우선 1단계 MRA를 연내 체결할 예정이었으나 싱가포르의 제안으로 연내까지 1단계 및 2단계 체결을 목표로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 중이다.

또한 한국은 유럽연합(EU)과 APEC TEL MRA방식이 아닌 FTA 양자협약 방식으로 MRA 2단계 수준의 FTA를 체결하고 2011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체결내용에 대하여는 본 연구서의 해당 장에 자세히 기술되었으며 한-EU FTA는 그동안 추진해왔던 MRA방식이 아닌 민간인증제도(SDoC)방식에 의한 최초의 협약에 의의가 있다. 또한 한국은 일본과 MRA를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는 잠정 중단의 상태에 있다. 2004년 일본은 정부 주도의 강제인증 제도를 폐지하고, 민간 자율인증제도(SDoC)를 도입함에 MRA 대상 및 범위에 대한 논의가 지속으로 2005년 이후 양국간 FTA 협상의 잠정 중단됨으로 MRA 논의도 중단 되었으나 최근 양국의 FTA추진으로 MRA추진을 재 준비 중에 있다.

2. APEC TEL MRA 기본입장 및 대응

가. 기본 입장

현재까지 추진된 MRA는 모두 시험 성적서를 상호 인정하는 1단계 MRA 형식이었으나 우리나라 전파법 개정으로 민간 자율인증제도(SDoC)가 도입됨에 따라 그동안 논의 중이었던 미국, 캐나다, 싱가포르 등과 2단계 MRA를 APEC TEL MRA 방식에 의하여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타

국가와는 자유무역협정(FTA)에 참여하여 FTA에 방송통신기기 MRA근거를 마련한 후 APEC TEL MRA 방식을 근간으로 MRA를 추진할 것이다.

그동안 미국, 캐나다 및 싱가포르 등 MRA 상대국이 우리나라의 국제기준(ISO Guide 17025, 17011, 65)에 의한 인증기관, 인정기관의 객관성 유지(관리기관 분리), 객관성이 확보된 인정기구에 의한 인증·시험기관 지정 및 객관성 검증 등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에 따라 2011년 3월 전파법을 개정하여 제기된 문제를 제도적으로 모두 해결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방송통신기기 적합성평가기관 지정 및 관리를 위한 방송통신 분야 전문심사기구인 한국방송통신 분야 시험소인정프로그램(Korea Communications Laboratories Accreditation Program : KCLAP)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시험기관 인정협의체(Asia Pacific Laboratory Accreditation Cooperation : APLAC)의 정회원 가입으로 국제적 신뢰성을 확보하려고 노력 중이다.

나. 제43차 APEC TEL MRA 회의 및 주요국간 양자협약 대응

지난 2011. 3. 27(일) ~ 3. 30(수), 중국 항저우에서 개최된 제43차 APEC TEL MRA회의에서 회원국들은 참가국들의 적합성평가 제도 및 MRA 등 추진현황 보고하였다. 우리나라는 인정기구설립 및 적합성평가제도 변경 등에 대하여 별도의 발표를 가졌다. 주요회의 내용은 상대국 기술기준을 수용하는 기술동등성(MRA-ETR) 이행 가이드라인의 조율, 사후관리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한 캐나다측 초안 발표(차기회의에서 최종조율), 차기회의에서 MRA 교육프로그램을 실시 협의 등이며 특별히 우리나라는 MRA 효용에 대한 연구결과 발표를 제안하였다.

이와는 별도로 우리나라는 KCLAP의 APLAC 정회원 가입을 위한 협의를 통하여 APLAC 운영위원인 대만 인정기구의 Mr. Nigel Jou에게 ICT 분야 시험기관 인정기구 KCLAP 설립에 대해 문의하였다. KOLAS 이외 인정기구 필요성 질의에 대해 KOLAS는 ICT 분야에 권한이 없고 KCLAP은 한국

관계법에 의해 설립되었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동 위원은 APLAC 정회원 가입에 대해 한국 관계법에 의해 설립되었기 때문에 정회원 가입에 문제없으며 KCLAP의 가입을 적극 지원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아울러 2011년 5월 APLAC 내부회의에 맞추어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면 9월 총회 때 정회원 가입이 가능할 것이라고 천명하였다.

같은 회의에서 캐나다에게 우리 측은 인정기구 KCLAP 설립 등 제도변화에 대해 설명하였다. 캐나다는 인정기구가 설립됨에 따라 2단계 MRA를 연내에 체결하는 한편 사후관리에 대한 MoU 체결을 제안하였다. 따라서 양국은 APLAC 총회 이후 연내에 2단계 MRA와 MoU 체결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싱가포르에게 인정기구 KCLAP 설립으로 MRA에 대한 싱가포르 국내법이 요구하는 조건이 모두 충족되었음을 설명하였다. 이에 싱가폴측은 1단계와 2단계를 동시에 추진하자고 제안하였다. 특히 6월 싱가포르에서 개최 예정인 ICT 장관회의의 적극 활용 제안하였으나 싱가포르 ICT 장관회의에 우리나라가 참석치 못하여 동 계획은 차기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조율하였다. 이번회의에서 양국은 금년 내 1단계 체결에 기본적으로 합의하였으며, 2단계까지 동시 체결 등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하기로 협의를 마쳤다. 그 외 대만, 베트남, 중국과 이루어진 양자협약에서 대만은 한국이 인정기구 설립 등 국제적 체계 구축을 완료함에 따라 우리 측에게 MRA 추진의사를 타진하였다. 이에 대하여 양국은 향후 양국간 제도에 대해 자료를 교환하는 등 협력에 합의하였다. 베트남은 유선분야에서 무선 및 정보기기까지 협력분야 확대에 따라 조속히 시험기관이 상호 인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제안하였으며 양국은 상호 노력에 합의하였다. 향후 추진이 예상되는 한-중 FTA/MRA에 대비하여 중국측 관계 당국 및 관계자와 접촉을 갖고 양국의 MRA 협의회 양국의 담당자를 확인하였다. 양국간 인증제도 및 관련 조직간 역할에 대하여 정보를 교환하였다. 하지만 주요 교역 상대국인 미국 및 일본과의 양자협약은 담당자의 미 참석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3. APEC TEL MRA 문제점 고찰 및 시사점

우리나라는 미국, 캐나다 등 4국과 1단계 MRA를 체결한 이후 MRA 체결이 없었다. MRA 적용 분야에서도 미국과의 MRA에 있어서는 전기안전분야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양국의 시장진입 완화를 위한 MRA의 효과가 다소 미흡하다. 따라서 미국, 캐나다와는 2단계 MRA 체결협상을, 싱가포르와는 1단계 MRA 체결협상을 조속히 추진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추진이 지연되는 이유는 주로 MRA상대국 규제기관의 업무관할 범위가 우리나라와 상이성에 기초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유·무선 및 전자파적합 분야는 물론 전기안전분야에 대한 규제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미국의 경우에는 전기안전분야 규제권한이 미연방통신위원회(FCC :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가 아닌 노동부 산하의 보건환경 위생청(OSHA : Occupational Safety & Health Administration)에 있다. 또 다른 원인은 우리나라의 적합성평가제도가 국제기준에 의한 적합성평가기관의 지정절차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등으로 사안별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다.

(미국 및 캐나다 2단계, 싱가포르 1단계 MRA 추진 지연) 시험기관 지정 절차 등의 관련 법제도 마련이 지연되고, 적용 대상품목의 범위 문제에 대한 상호간 이견

※ 동 사안은 한국의 방송통신기기분야 전문심사기구 구축과 제43차 APEC TEL MRA회의(2011.3, 중국) 시 해당국과의 협의로 모든 문제가 타결되었음

(미국과 MRA에서 전기안전분야 제외) 미국의 전기안전 인증기관이 노동부 산하 보건환경위생청(OSHA)으로 FCC와의 방송통신기기 MRA 1단계 협상에서 제외

(베트남, 칠레 체결의 문제점) 당사국의 적합성평가제도 현황이나 입법체계에 대한 사전 철저한 파악 없이 협약체결을 하여 2단계 체결이 지연

(MRA의 직접적인 경제적 효과 제한적) MRA 등의 비관세장벽은 관세 장벽과 달리 교역량 규모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는 못하나, 시간과 비용을 감소시켜 수출의 촉진수단이 되고 기술기준 수준의 향상에는 기여

(MRA 협상전략 및 대상국 선정기준 모호) 현재 논의 되고 있는 MRA 는 과거 캐나다, 미국에서와 같이 MRA 단독으로 추진되기 보다는 싱가포르, EU와 같이 외교부 주관의 FTA에서 MRA 근거의 마련 또는 MRA 필요 없는 FTA 본문조항에 의하여 체결되고 있는 양상이다. 또한 현재 논의 되고 있는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과의 FTA에서도 MRA가 논의 중 이다. 하지만 싱가포르 및 EU의 체결 유형에서 나타났듯이 MRA를 FTA에 근거조항으로 규정하고 별도의 MRA를 추진할지?(싱가포르 유형), 별도의 MRA 없이 FTA교역조건으로 직접 추진할지?(EU 유형), 어느 형태가 바람 직한지? 등에 대한 기준이 없으며, FTA 추진국 모두에 MRA를 추진할지 등에 대한 대상국 선정기준 또한 모호하다.

그동안의 MRA 추진 경험을 고려하면 MRA는 외국과의 대등한 수준의 제도적 교류이기 때문에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국내제도의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 실례로 미국(1단계 MRA 체결 : 2005년), 캐나다(1단계 MRA 체결 : 1997년), 및 싱가포르(MRA협약 개시 : 2004년)와의 1단계 또는 2단계 체결의 지연은 우리나라의 적합성평가체제의 국제적 기준 미흡에 있다. 구체적으로 2단계 MRA는 상호 상대국에서 자국 기준에 따라 지정하여 통보한 인증기관을 인정하는 것이나,

- 국내에서 방송통신기기의 유일한 인증기관인 전파연구소는 지정의 방법이 아니라 법령의 위임에 의해 인증업무를 수행하므로, 인증기관을 지정하는 법적 장치, 절차, 지정기준이 없으며
- 국내 인증기관 지정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상대국은 또한 한국 기준대로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가 없으며, 설령 지정하였다 하더라도 인정 될 수가 없음
- 또한 ISO/IEC 17011 요건에서 정부조직인 인정기관은 역시 정부조직인

인증기관(및 시험기관)과 운영에서 분리할 것이 명시되어 있으나 한국은 지정기관과 인증기관의 분리가 안되어 있음

따라서 위와 같은 문제는 정부기관인 전파연구소가 인정기관과 인증기관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전파연구소 이외의 기관이 인증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참조로 이와 같은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전파연구소는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전문심사기구의 구축을 추진하여 왔으며, 2011년 3월 방송통신분야에 대한 국제적인 적합성평가체계 구축을 위한 전문심사기구(KCLAP, Korea Communications Laboratory Accreditation Program)를 구성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절차를 남겨 놓고 있다. 이에 대한 승인이 완료되면 아시아·태평양지역 인정기관 협력기구(APLAC : Asia Pacific Laboratory Accreditation Cooperation)의 정회원 가입을 2010년 연내 추진할 예정이다. 이러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적합성평가제도의 구축으로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체결 건에 대한 문제가 신속히 종료될 수 있을 것이다.

미국과 MRA에서 전기안전분야 제외된 것이나 베트남, 칠레 체결의 문제점은 상대국 적합성평가제도 현황이나 입법체계에 대한 철저한 파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과 MRA 협상 형태, 대상국 선정 및 우선순위 결정에 대한 전략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MRA 추진 전, 정책연구 및 연구결과를 토대로 하는 종합판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MRA의 직접적인 경제적 효과 제한적이고 간접적으로 수출지원 효과만을 가지는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간접 효과의 극대화를 위한 검토가 필요하다.

제3장 한-EU FTA 이행방안

제1절 한-EU FTA 체결 내용

1. 한-EU FTA 체결사항

가. 한-EU FTA 체결 경과

- '06.~'09. : 예비협약 및 협상진행
- '09.10월 : 한·EU FTA 협정문 가서명
- '10.10월 : 한·EU FTA 협정문 정식서명
- '11.2.17. : 유럽의회 동의안 통과
- '11.5.4. : 국회 본회의 비준동의안 통과
- '11.7.1. : 한·EU FTA 발효

나. 한-EU FTA 비준 및 발효 절차

- 한·EU FTA는 협정문 확인 작업 후, 우리 측은 국무회의 승인과 대통령의 재가를 받고, EU측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정식서명을 체결하였다.
- 정식서명 후 우리는 국회비준, EU는 EU의회의 동의와 27개 회원국 별로 의회 승인 절차를 밟게 된다.
 - 잠정적용 조항에 따라, EU 의회의 동의 없이 EU 27개 회원국 대표로 구성된 이사회의 승인으로 협정의 잠정 발효가 가능하다.
 - ※ 한-EU FTA 협정문 제15.10조제5항
 - 비준 후, 협정 이행을 위해 필요한 법률 제·개정 작업을 수행한다.
- 국내절차 완료에 대한 확인서한 교환 후 60일 이내 발효 또는 양측이 합의

하는 다른 날에 발효(협정문 제15.10조제2항)

다. 부속서 구성

- 한-EU FTA 협정문 제2장은 상품에 대한 내국민대우 및 시장접근에 관한 것으로서 전체 5개의 부속서로 구성되며, 그 중 두 번째 부속서인 <부속서 2-나>에서 전자제품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다.
 - <부속서 2-나>는 전적으로 전자제품의 안전과 전자파적합성에 대한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평가절차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다.
- 부속서의 범위는 전자제품의 전기안전과 전자파적합성(EMC)에 관한 것으로서, 국내의 경우 전파법과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적용범위에 해당되는 전기제품이 그 대상이다.
- 적합성평가절차 관련 주요 규정은 부속서 제3조 적합성평가절차, 제4조 경과조치, 제5조 통합 및 요건의 점진적 축소와 동 부속서 두 번째 부록인 <부록 2-나-2>이다.
 - 양측에 대해, 특히 국내법상 전파법과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대해 동일 절차의 적용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부속서 본문에서는 수용 가능한 다수의 선택적 적합성평가 절차만을 규정하고 양측에 각각 어떤 절차가 적용되는지는 <부록 2-나-2>에서 적시하고 있다.
- ※ EU(European Union, 유럽연합) :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헝가리,스페인, 스웨덴, 영국 27개국

라. 적합성평가 상호인정 대상기자재

- 유무선 통신기기를 포함하여, 양측 법이 규율하고 있는 모든 전기전자 제품을 부속서의 적용범위로 규정(부속서 2-나 제1조 제2항, 부록 2-나-1의 제1항, 제2항)하고 있다.
 - 적합성평가절차는 전기안전(safety) 및 전자파적합성(EMC)을 대상으로 한다.
 - EU측은 (i) EMC Directive 대상품목, (ii) Low Voltage Directive(저전압 지침) 대상 품목, (iii) R&TTE Directive(Radio and Telecommunications Terminal Equipment Directive: 유무선통신기기 지침)의 EMC, 전기안전 대상품목을 적용범위로 한다.
 - 우리나라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전파법, 전기통신기본법 대상품목을 적용범위로 한다.
 - ※ 대상품목 : 전기전자제품, 가정용 전기용품, 소비자 전자제품
 - 방송통신기기는 현재는 유선 및 정보기기의 EMC분야와 유선기기 전기안전분야가 대상이나, 향후 무선기기에 대한 EMC 확대 시 무선기기도 대상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적용범위는 양국 간 상품 무역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의 준비·채택 및 적용에 해당한다.
- 대상 품목에 대하여 한·EU 양 당사자에 의해 지정 또는 승인된 시험기관에 의한 시험과 규제기관 등록을 의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 적합성평가절차

- 전자제품의 EMC분야 적합성평가절차로서 EU는 아래의 첫 번째 절차를, 한국은 전파법에 대해서는 두 번째를 각각 수용한다.

① 어떠한 적합성평가기관의 개입이나 인정된 시험기관에 의한 제품시험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공급자적합선언(SDoC Type IV)

② 다른 쪽 당사자에 의해 통보된 당사국 내 자격 있는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에 근거한 공급자적합선언. 단, 적합선언서와 관련 문서의 사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SDoC Type I)

※ 자격 있는 시험기관 : EU측 법령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이거나 인정기관의 인정을 받은 시험기관, 또는 사후 시장 감시의 자격이 있는 시험기관을 말함(각주5)

○ 다만, 협정 발효 후 3년 이내의 경과기간을 두고 동 경과기간 동안에는 전과법 적용제품에 대해 EMC 인증이 요구되는 경우 각각 다음과 같은 한시적 절차를 경과조치로 적용하게 된다.

- 전과법상 EMC 인증대상 제품에 대해서는 EU측 지정 적합성평가기관에 해당하는 NB(Notified Body)가 발행한 인증서를 수용한다.

○ 통합 및 요건의 점진적 축소를 위한 조치로서 한국은 협정 발효 후 5년 이내에 EMC 분야에 한해 EU측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가장 완화된 형태의 공급자적합선언을 도입한다.

바. 적합성평가 시험소 통보 시 절차

○ 인증기관의 능력은 반드시 인정의 방법에 의해 입증하고, 지정기관은 적합성평가기관으로 하여금 적합선언서의 목록을 공표·유지하며 상대국 요청 시 적합선언 대상기기 목록을 제공토록 보장한다.

※ 인정(accreditation) : 적합성 평가기관이 시험 또는 인증에 필요한 자격 기준을 충족함을 지정기관 또는 인정기구가 공식적으로 보증하는 것

○ 적합성평가 기관의 의무사항(등록, 자료보관, 사후관리 등)이나 기술규정 및 기술규정 개정사항에 관한 공표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사. FTA의 효력발생

- FTA의 효력발생절차는 당사국의 합의에 따라 체결된 해당 협정문의 최종조항에 규정됨
- FTA 등의 국제조약은 해당 조약이 규정하고 있거나 당사국이 합의하는 방법과 일자에 따라 효력을 발생
- 협정이 발효되는 날 협정내용을 모두 이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실무협의를 통해 추가·보완사항에 대한 추진일정 등을 통보

< 한·EU FTA 발효관련 조항 >

(※15장-제도 일반 및 발효조항)

- 협정의 정식 발효는 양측이 각자의 국내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한 날로부터 60일 경과 후 또는 양측이 합의하는 다른 날에 발효(제15.10조제2항)
- 정식 발효 이전에 양측이 잠정 적용을 위한 각자의 내부절차의 완료를 통보한 날의 다음 달 첫째 날부터 잠정 적용 가능(제15.10조제5항)
 - 잠정 적용 조항에 따라, EU 27개 회원국 대표로 구성된 이사회의 승인으로 협정의 잠정 발효 가능
 - 협정의 잠정 적용은 정식 발효가 지나치게 지연되는 것에 대비한 것으로, 한·EFTA FTA에서도 잠정 적용을 규정(한·EFTA FTA 제10.6조제5항)

아. 협정문 주요 조항

부속서 2-나 전자제품	비 고
<p>제1조</p> <p>1항 라: 중복적이고 불필요하게 부담이 되는 적합성평가절차의 철폐를 통하여 “단일시험”과, 실행가능한 경우, 공급자의 적합성 선언을 증진하는 것</p> <p style="text-align: center;">제3조 적합성평가절차</p>	

나: 제4조에 규정된 경과조치를 포함하여 이 부속서상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각 당사자는 적용대상 제품의 전자파적합성 또는 안전에 관한 기술규정에 대한 적합성 보증으로서 다음의 절차 중 하나 이상을 근거로 제품을 자신의 시장에서 수용한다.

- 1) 어떠한 적합성 평가기관의 개입이나 인정된 시험소에 의한 제품의 시험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공급자의 적합성 선언
- 2) 이 협정의 발효시 또는 그 이후의 통보에서 다른 쪽 당사자에 의하여 통보된 그 당사자의 영역 내 모든 시험소의 시험 성적서에 근거한 공급자의 적합성 선언. 통보하는 당사자는, 수입 당사자에 의한 사전 승인이나 검증 없이, 그 당사자의 영역 내에서 관련 시험을 수행할 자격이 있는 모든 시험소를 통보하는데 있어 단독으로 책임을 진다. 수입 당사자는 제품이 시장에 출시되기 전 공급자가 적합성 선언서를 제출할 것과 그 선언서에 시험 성적서를 발행한 시험소의 이름과 시험 성적서의 발행일이 포함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수입 당사자는 주요 부품목록을 포함하여 제품에 적용가능한 요건에 대한 적합성을 증명하는 시험성적서의 사본과 제품의 일반적 설명서도 요구할 수 있다.
- 3) 다음이 발행한 시험 성적서에 근거한 공급자(가): 수입 당사자가 지정한 하나 이상의 적합성 평가기관과 시험 성적서의 상호 수용을 위한 자발적 약정을 체결한 다른쪽 당사자의 모든 시험소의 적합성 선언

다. 양 당사자는 적합성 선언서를 발급, 변경 또는 철회하는데 공급자가 단독으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수용한다. 양 당사자는 적합성선언서에 날짜가 기입되고, 적합성 선언서에 공급자 또는 공급자가 권한을 부여한 당사자의 영역 내의 대표자, 그 선언에 서명하도록 제조업자 또는 그의 권한을 부여받은 대표자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인, 그 선언의 적용대상인 제품, 그리고 적합성 선언에 적용된 기술규정이 적시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공급자의 적합성선언이 제품의 동일한 생산 공정에 대한 것일 때, 그 생산공정의 각 품목에 적용된다. 시험이 수행될 때, 시험소의 선택은 공급자가 한다. 그리고

라. 이 조에 규정된 것 이외에 당사자는 자신의 기술규정을 준수하는 제품의 출시를 방해하거나 달리 지연시킬 수 있는 어떠한 유형의 제품 등록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당사자가 나호3)목에 맞게 공급자의 선언을 검토하는 한, 그 검토는 시험이 그 당사자의 관련 기술규정에 따라 수행되었다는 것과 그 서류에 포함된 정보가 완전하다는 것을 제출된 서류에 근거하여 검증하는 것에만 한정된다. 그러한 모든 검토는 그 당사자 시장에서의 제품 출시에 과도한 지체를 야기해서는 아니 되고, 그 제품이 그 당사자의 기술 규정을 준수하고 제출된 서류가 완전하다면 선언은 예외 없이 수용된다. 선언이 거부된 경우, 그 당사자는 거부의 근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이를 공급자가 어떻게 시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설명과 함께 그 결정을 공급자에게 즉시 전달한다.

제4조 경과조치

1 : 대한민국은 이 협정의 발효로부터 3년 이내에 이 부속서 제3조나호를 준수하는 한편, 유럽공동체는 이 협정의 발효시에 그 호를 준수한다.

2. 제1항에 규정된 경과기간 동안, 대한민국이 이 부속서의 적용범위에 해당

<p>되는 제품에 대하여, 제3자 시험을 포함하여, 적용대상 제품의 전자파적합성 또는 안전에 관한 기술규정에 대한 강제인증을 이 협정의 발효시에 적용하는 한, 대한민국은 그러한 제품의 출시를 수용하기 위하여 다음을 요구할 수 있다.</p> <p>가. : 유럽공동체의 법령에 따라 “통보기관”으로 지정된 유럽공동체내의 적합성평가기관이 발행한 인증서. 유럽공동체는, 대한민국의 사전 승인이나 검증 없이, 그 영역 내에서 적합성 평가기관을 선택하는데 있어 단독으로 책임을 지며, 이 협정의 발효시에 관련기관의 목록과 그 이후 모든 변경을 대한민국에 통보한다. 또는</p> <p>나. : 대한민국의 절차에 따라 지정된 적합성평가기관이 발행한 그 기술규정에 대한 인증서. 대한민국은 다음이 발행한 시험성적서에 근거한 그러한 인증서를 수용한다.</p> <p>1) 대한민국이 지정한 하나 이상의 적합성평가기관과 시험성적서의 상호 수용을 위한 자발적 약정을 체결한 유럽공동체내의 모든 시험소</p> <p>3. : 부록 2-나-3에 기재된 제품에 대하여, 대한민국은 제1항에 규정된 경과기간의 만료 후 이 부속서 제4조제2항 나호에 따른 인증서에 근거하여 적용대상 제품의 안전에 관한 자신의 기술규정에 대한 적합성 보증을 계속 요구할 수 있다. 부록 2-나-3에 기재된 각 제품에 대하여, 이 부속서 제3조 나호에 따라 적용대상 제품의 안전에 관한 자신의 기술규정에 대한 적합성 보증을 수용하는 것이 인간의 건강과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지 여부가 제1항에 규정된 경과기간 말까지 검토될 것이다. 그러한 위험 평가는 안전사고에 대한 소비자 보고와 제품검사의 부적합률과 같은 이용가능한 과학적이고 기술적 정보에 근거하여, 출시된 그러한 제품에 대하여 수행될 것이다. 제품이 의도된 최종 용도로, 그리고 합리적이고 통상적인 주의를 기울여, 사용되었는지 여부도 고려될 것이다. 위험 평가의 결과가 해당제품에 대하여 이 부속서 제3조나호를 준수하는 것이 인간의 건강과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경우, 또는 수립된 사후 시장감시 체계가 그러한 위험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없는 경우, 이 부속서 제4조제2항나호에 규정된 적합성 보증이 유지될 수 있다. 양 당사자는, 경과기간의 종료 후 매 3년마다 부록2-나-3에 기재된 제품을 더욱 축소시키기 위하여 위험 평가를 상품무역 위원회에서 검토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7조 이행 및 협력</p> <p>4.: 적용대상 제품의 전자파적합성 또는 안전에 대한 기존 기술규정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기술규정을 개발할 때에,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에게 사전에 통보하고, 요청이 있는 경우 이용가능한 추가적 정보나 다른 쪽 당사자가 제시한 의견에 대한 서면답변을 제공하며, 적절한 경우 다른 쪽 당사자의 견해를 고려한다.</p>	
부록 2-나-2	
<p>1. 유럽공동체는 모든 적용대상 제품에 대하여 자신의 기술규정에 대한적합성 보증으로서 부속서 2-나 제3조나호 1)목에 규정된 절차를 수용한다.</p> <p>2. 대한민국은 자신의 기술규정에 대한 적합성 보증으로서 다음을 수용한다.</p> <p>가. 이 협정의 서명일에 전파법 또는 전기통신기본법의 적용범위에 해당되는 제품에 대하여,</p> <p>1) 부속서 2-나 제4조제1항에 규정된 경과기간 동안, 부속서 2-나의 제4조제2항가호에 정의된 절차, 그리고</p> <p>2) 경과기간 후에는 부속서 2-나 제3조나호1)목 또는 제3조나호2)목에</p>	

<p>정의된 절차. 두 가지 절차 중 선택은 대한민국이 한다.</p> <p>나. 이 협정의 서명일에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적용범위에 해당되는 제품에 대하여,</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부속서 2-나 제4조제1항에 규정된 경과기간 동안, 부속서 2-나 제4조 제2항나호에 정의된 절차, 그리고 2) 경과기간 후에는 부속서 2-나 제3조나호1)목, 제3조나호2)목 또는 제3조나호3)목에 정의된 절차. 세 가지 절차 중 선택은 대한민국이 한다. <p>3. 이 협정 서명일에 이 부록 제2항에 언급된 둘 이상의 법의 적용범위에 해당되는 제품에 대하여, 공급자는 이 부록 제2항의 가호 또는 나호에 따라 대한민국이 선택한 어느 하나의 절차에 따라 전자파적합성에 대한 적합성 보증을 제공할 자유가 있다. 어떤 제품이 향후 이 부록 제2항에 언급된 둘 이상의 법의 적용범위에 해당되는 경우, 적용대상 제품의 전자파적합성에 관련된 것이든 안전에 관련된 것이든, 동일한 규칙이 적용된다.</p>	
--	--

제2절 한 - EU FTA 이행 방안

1. 한 · EU FTA 관련 정비대상 법령

○ 법률

법률명	개정 내용	협정 관련내용	비고
전파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자 자기적합선언(SDoC) 도입 근거 마련(제58조의2 신설) ·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적합성평가체계 구축 근거규정 마련(제58조의8 및 제58조의9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EU FTA 체결에 따라 적합성평가절차에 SDoC 제도 도입 (한-EU FTA 전기전자 부속서 - 제4조제4.1항) 	국회 통과

○ 대통령령

법령명	개정내용	협정 관련내용	비고
전파법 시행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통신기기 등의 적합성평가 제도 및 관리 관련 세부사항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파법과 동일 	입법 작업

가. 전파법 개정안의 주요내용

- 기존의 인증제도(“적합인증”) 외에 공급자에 의한 적합확인 후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는 “적합등록” 제도를 새로 도입하고 있으며, 이 중 적합등록 제도는 향후 EMC 분야에 우선적으로 적용 예정(제58조의2)
- 개정 전파법의 적합등록은 시험기관의 요건을 지정시험기관으로 한정하는 절차와(SDoC Type I) 그렇지 않은 절차(SDoC Type III)의 두 가지 형태로 구분

나. 적합등록 도입에 따른 FTA 후속조치

- 협정문의 경과조치는 제3자 인증을 적용하는 한 적용하도록 되어있고, 전파법에서는 이미 DoC를 도입한 적합등록을 시행함에 따라 경과기간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 EU 시험기관에서 시험한 결과로서 적합성 선언한 것을 수용하는 절차 등을 규정한 고시를 마련하고,
- 이행절차에 대한 EU측 의견 청취 및 SDoC 대상품목 등에 대한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한다.

2. 적합성평가 절차

가. 적합성평가 이행절차 (경과기간 없음)

- 국내 제조업체가 EU로 방송통신기자재 수출 시
 - EU기준에 따라 전자파적합성과 전기안전 시험(국내시험)을 거쳐 적합 선언한 후 EU에서 제품 판매가 가능하다.(현재와 동일)
- EU 제조업체가 한국기준을 적용하여 EU 시험기관에서 전자파적합성과 전기안전 시험을 하는 경우, 우리나라에서 해당 시험을 면제한다.
 - ※ 모든 대상기자재에 대하여 대한민국은 시험성적서 및 사용자설명서를 요구할 수 있음

- 적합인증 대상 : 유선, 무선, 전자파인체흡수율(SAR) 대상 기기는 국내 지정 시험기관에서 해당 시험을 해야 하며, 전파연구소에서 적합인증 심사 후 적합인증서를 발급하게 된다.
 - ※ EMC/전기안전 분야에 대해 적합선언서를 제출하며, 해당 분야의 인증 심사는 생략한다.

- 지정시험 적합등록 대상 : EU 시험기관에서 시험 후 EMC/전기안전 분야에 대해 공급자 적합성 선언서, 시험성적서 사본, 사용자설명서 등 제출하여 적합등록을 한다.(국내대리인 지정)
 - ※ 자격있는 시험기관 목록을 우리측에 사전 통보한다.

- 자기시험 적합등록 대상 : 지정된 시험기관이 아닌 시험소나 자체 시험설비로 시험 후 적합성평가기준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확인서만 제출하면 적합등록 할 수 있으며, EU 시험기관에서 시험 후 EMC/전기안전 분야에 대해 공급자 적합성 선언서, 시험성적서 사본, 사용자설명서 등 제출하여 적합등록을 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나. 적용대상

- o FTA 협정문 원산지 규정에 따라 유럽연합에서 생산된 제품에 한하여 적용이 가능하다.

< 참조 1 >

한 · EU FTA의 경과기간

Annex 2-B 절차조항		적합성평가절차		전파법, 전기통신기본법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험	적합확인		
경과 기간 이후 선택	3(b)(i)	EU내 모든 시험기관	공급자	자기시험 적합등록	공급자 적합성선언 (*12.1.1.시행)
	3(b)(ii)	EU에 의해 우리측에 사전통보된 시험기관	공급자 : 제품유통전 SDoC문서 제출	적합인증 (해당분야), 적합등록	자율안전확인
	3(b)(iii)	국내 지정기관과 MRA를 체결한 시험기관, 또는 CB시험기관	공급자 : 제품유통전 SDoC문서 등록	-	자율안전확인 안전인증
경과 기간 (발효 후 3년 이내)	4.2(a)	EU 지정기관 시험성적서	EU 지정기관-인증서 (Notified Body)	적합인증 (해당분야), 적합등록	-
	4.2(b)	국내 지정기관과 MRA를 체결한 시험기관, 또는 CB시험기관	국내 지정기관	-	안전인증

- o **적합성평가절차(제3조)** : 양국은 경과조치 또는 Annex에 정해진 이외에는 시험성적서의 요건으로 다음중 하나를 선택
 - 3(b)(i) 수출국내 모든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인정
 - 3(b)(ii)방송통신기자재 : 우리측에 사전 통보된 시험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만 인정 (제품유통에 앞서 적합선언서, 시험성적서 등 제출)
 - 3(b)(iii)전기용품 : 수입국 지정기관과 시험성적서 상호인정약정(MRA)을 체결한 수출국 시험기관, 또는 IECCE CB Scheme에 따른 수출국 CB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만 인정(제품유통에 앞서 적합선언서, 시험성적서 등 등록)
 - ※ CB : Certification Body, 인증기관

- o **경과조치(제4조)** : 한국은 협정발효 후 3년 이내에 3.b항을 준수하고, 그 이전이라도 인증대상 품목에 대하여는 다음 절차 중 하나를 선택
 - 4.2(a)방송통신기자재 : EU 절차에 따라 EU내 통보기관(Notified Body)가 발행한 인증서를 수용
 - 4.2(b)전기용품 : 한국 지정기관과 상호인정약정을 체결한 EU 시험기관, 또는 EU내 CB 시험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수용. 단, 인증은 한국측 절차에 따른 지정기관이 시행.
 - ※ 전기용품 중 일부품목(Appendix 2-B-3)에 대해서는 전기안전에 대해서 경과기간이후에도 4.2(b)의 절차를 유지 가능

< 참조 2 >

EU국가 인증 실적

o '06.~'10. EU 업체에서 인증받은 건수 및 정보기기 비율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합계
인증건수	219	230	260	316	592	1,617
정보기기 건수	107	101	105	132	416	861
비율(%)	48.9	43.9	40.4	41.7	70.3	53.2

EU국가 인증받은 업체 현황

o EU 27개국 중 16개국 145개 업체에서 식별부호 발급받음

국가별	업체수	국가별	업체수
오스트리아	2	영국	23
벨기에	2	이탈리아	5
스위스	5	리히텐슈타인	1
체코	1	룩셈부르크	1
독일	57	네덜란드	4
덴마크	6	노르웨이	2
스페인	3	스웨덴	6
핀란드	10	프랑스	17

< 참조 3 > EMC 기술기준 현황

구분	기술기준		국제 규격명	국내 규격명	
기본 규격	EMI		CISPR 16-1-1 (측정기구)	KN 16-1-1	
			CISPR 16-1-2 (전도장애장비)	KN 16-1-2	
			CISPR 16-1-3 (장애전력장비)	KN 16-1-3	
			CISPR 16-1-4 (방사장애장비)	KN 16-1-4	
			CISPR 16-1-5 (시험장)	KN 16-1-5	
			CISPR 16-2-1 (전도성장해측정)	KN 16-2-1	
			CISPR 16-2-2 (장애전력측정)	KN 16-2-2	
			CISPR 16-2-3 (방사성장해측정)	KN 16-2-3	
			CISPR 16-2-4 (내성측정)	KN 16-2-4	
			IEC61000-3-2 (하모닉)	-	
			IEC61000-3-3 (플리커)	-	
공통 규격	EMS		IEC61000-4-2 (정전기)	KN61000-4-2	
			IEC61000-4-3 (방사성 RF)	KN61000-4-3	
			IEC61000-4-4 (EFT/버스트)	KN61000-4-4	
			IEC61000-4-5 (서지)	KN61000-4-5	
			IEC61000-4-6 (전도성 RF)	KN61000-4-6	
			IEC61000-4-8 (전원주파수자기장)	KN61000-4-8	
			IEC61000-4-11(전압강하)	KN61000-4-11	
제품 규격			ITU-T K.20 (원격통신장비)	-	
			ITU-T K.21 (구내전기통신장비)	-	
			ITU-T K.44 (서지공통규격)	-	
제품 규격	ISM 기기	EMI	CISPR11(산업,과학,의료용)	KN11	
		EMS	IEC60601-2(의료용전기기기)	KN60601-1-2	
	방송 수신기	EMI	CISPR13(방송수신기)	KN13	
		EMS	CISPR20(방송수신기)	KN20	
	가전 기기	EMI	CISPR14-1(가전용 전기기기)	KN14-1	
		EMS	CISPR19(전자렌지)	KN19	
			EMS	CISPR14-2(가정용 전기기기)	KN14-2
	조명 기기	EMI	CISPR15(조명기기)	KN15	
		EMS	CISPR14-2(가정용 전기기기)	KN14-2	
	정보 기기	EMI	CISPR22(정보기기)	KN22	
		EMS	CISPR24(정보기기)	KN24	
		자동차(EMI/EMS)		EC directive 95/54(자동차)	KN41
				CISPR12(자동차, 모터보트 등)	
				CISPR25(자동차 수신기)	
	고속 철도	EMI	EN 50121(고속철도)	IEC 62236-1~5 ('03-04 : 고속철도)	KN50
EMS		EN 50121(고속철도)	IEC 62236-1~5 ('03-04 : 고속철도)	KN51	
전력선 통신	EMI	CISPR : 규격 작업 중지 ITU-T K60, ITU-R		KN60	
	EMS	CISPR24 (정보기기)		KN24	
	무선기기(EMI/EMS) (휴대폰, 무선랜)		EN 301- 489 시리즈	KN 301-489 시리즈	

< 참조 4 > 한·미 FTA와 비교

1. 이행관련 사항

□ 미국의 1단계 및 2단계 MRA 대상기기

- 미국의 FCC 기기승인 체계는 규제강도에 따라 인증, 제조자적합선언, 적합선언, 입증의 4단계로 구분되며, 이 중 지정시험기관의 시험이 요구되는 인증 및 적합선언 대상기기가 1단계 MRA
 - FCC 또는 TCB에 의한 승인이 요구되는 인증 대상기기가 2단계 MRA(인증서의 상호인정) 대상기기에 해당
 - ※ 미-일 MRA는 미 연방규정 Title 47(47 CFR) 및 일본 전파법, 전기통신사업법에 명시되어 있는 무선기기와 통신단말기기를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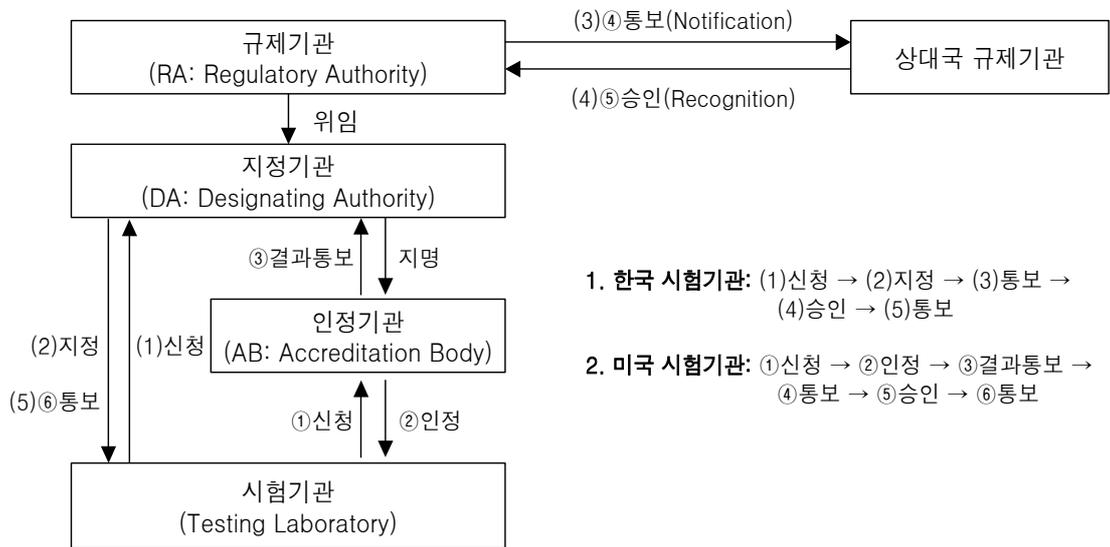
□ 적합성평가기관의 승인/등록절차(recognition/registration)

1) 미국

- 미국 FCC가 적합성평가기관의 상호인정을 위하여 정한 일반요건에 따르면, 적합성평가기관은 수출국 내 인정기관에 의해 인정을 받아야 함
 - 지정기관은 적합성평가기관의 적격성을 평가·인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ISO/IEC 17011을 충족하는 인정기관을 지명할 수 있음
- 인정요건으로 시험기관(TB: Testing Body)은 ISO/IEC 17025를, 인증기관(TCB: Telecommunication Certification Body)은 ISO/IEC Guide 65를 각각 충족
 - ※ ISO/IEC Guide 17025 (시험·교정기관 자격 요건) : 조직 및 운영, 품질관리체계 감사 및 심사, 직원, 설비 및 환경, 교정 및 시험방법 등 규정
 - ※ ISO/IEC Guide 65 (인증기관 자격요건) : 조직, 운영, 품질시스템, 직원, 인증 결정, 사찰 등 규정

- 인정기관은 FCC의 평가사항 목록에 따라 적합성평가기관의 적격성을 평가하며, 적격성이 인정되면 지정신청서를 적합성평가기관의 자국 내 지정기관에 제출
- 지정기관은 관련사항을 검토하여 적합성평가기관의 지정요건 충족 여부를 결정하며, 지정요건이 충족되었을 경우 이를 FCC에 통보하는 절차를 따르고 있음

< 한미 MRA 1단계 이행절차 >



< 시험·인증기관 지정의 내국민 대우 >

- 자국의 적합성평가기관을 시험·인증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상대국 적합성평가기관도 내국민대우 원칙에 따라 비차별적으로 지정
 - 상대국 기관에 대한 비차별적 참여를 제한하는 경우, 상대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그 이유를 설명

2) 미일 MRA 2단계 사례

- 수출국이 지정된 적합성평가기관을 등록하고자 할 경우, 수출국은 수입국과 양국 공동위원회(Joint Committee)에 해당 기관에 대한 정보와 함께 등록 제안서를 송부

- 수입국은 제안서 접수일 후 30일 이내에 해당 적합성평가기관의 적격성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수출국과 공동위원회 공동위원장들에게 서면으로 통보
- 제안서의 수락 시 수입국 측의 공동위원회 공동위원장은 등록결정서에 서명하여 그 사본을 평가결과 통보서과 함께 수출국과 공동위원회 공동위원장들에게 송부하며, 적합성평가기관의 등록은 등록결정서의 서명일로부터 효력을 발휘
- 수입국은 등록결정일로부터 수출국 내 등록된 적합성 평가기관이 수행한 적합성 평가절차의 결과를 수락해야 함
- 공동위원회는 본 MRA의 실행에 관한 제반 문제를 논의하며, 양국의 각 대표자 1인 이상으로 구성된다. 공동위원장은 미국의 경우 FCC, NIST, USTR이며, 일본의 경우 외무성이 담당

< 미-일 공동위원회의 역할 분담 >

	역 할	미 국	일 본
1	미국 내 적합성평가기관의 등록, 등록 종료, 등록 보류, 등록 보류의 해지에 관한 사항의 결정	NIST	외무성
2	일본 내 적합성평가기관의 등록, 등록 종료, 등록 보류, 등록 보류의 해지에 관한 사항의 결정	FCC	
3	미국 내 적합성평가기관에 대한 이의 제기와 관련된 사항의 결정	NIST	
4	일본 내 적합성평가기관에 대한 이의 제기와 관련된 사항의 결정	FCC	
5	미국 내 적합성평가기관의 지정기준 충족성 여부에 대한 증명 요구	NIST	
6	일본 내 적합성평가기관의 지정기준 충족성 여부에 대한 증명 요구	FCC	
7	기타	USTR	

□ 한·미 FTA 관련 정비대상 법령

- MRA 2단계 이행을 위해 필요한 전기통신기본법(전파법으로 일원화)은 협상 내용에 유예기간이 부여되어 FTA 발효 후 입법 추진가능

□ FTA 이행관리

- 협정이행에 대한 모니터링과 양국간 TBT 이슈에 대한 신속한 처리, 정보 교환 및 협력증진을 위하여 양국 대표들로 TBT 위원회 설치

2. 발효관련 사항

□ 한미 FTA 발효를 위한 필요절차

- 우리의 경우 정부가 송부한 비준동의안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친 후, 본회의 표결에 부침
 - 국회의 비준동의 후, 대통령의 서명 및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로 비준 절차가 완료
- 미국의 경우, 행정부가 상·하원에 협정문을 포함한 이행법안을 제출하면 미 의회는 90 회기일내 하원 세입위원회와 상원 재무위원회, 상·하원 본회의의 검토 및 의결을 거쳐 이행법안을 처리
 - 의회를 거친 이행법안에 대통령이 서명함으로써 비준 절차가 완료
- 양국이 상기의 비준절차를 마치고, FTA 이행을 위한 국내절차를 완료했다는 확인서한을 교환하고 60일 후 또는 양국이 합의하는 날에 한·미 FTA 발효
 - ※ 미·일 MRA협정은 미-일 양국이 협정 발효에 필요한 내부절차를 각각 완료했다는 사실을 알리는 외교문서를 교환한 날로부터 2개월째 되는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되는 것으로 하고 있음

< 한미 FTA 최종조항 >

- 본 협정은 양국이 모두 국내 승인 절차를 완료했음을 부속서한으로 교환하고, 60일 경과 후 발효

□ 협정의 적용범위

- 방송통신 분야의 기술기준과 표준, 그리고 인증제도와 관련한 관계법령 및 규칙의 준비·채택 및 적용에 대하여 적용

< 참조 4 >

EA(유럽 인정기구 연합회) 가입된 EU내 인정기관

FULL MEMBERS

ACCREDIA

Filippo Trifiletti
Via Saccardo, 9
IT -- 20134 Milano
ITALY
Phone: + 39 022 100 961
Fax: + 39 022 100 9637
e-mail: trifil@accredia.it

BAS - Executive Agency "Bulgarian Accreditation Service"

Elza Janeva
52A, D-r G. M. Dimitrov blvd.
Sofia 1797
BULGARIA
Phone: +359 2 873 53 02
Fax: +359 2 873 50 03
e-mail: ea_bas@abv.bg

BELAC

Nicole Meurée-Vanlaethem
Federal Public Service Economy -
Division
Accreditation
WTC III - 5th floor
30, Boulevard Simon Bolivar
B-1000 Brussels
BELGIUM
Phone: +32.2.27 75 434
fax: +32.2.27 75 441
e-mail: belac@economie.fgov.be

BMWFJ - Bundesministerium für

Wirtschaft

Familie und Jugend

Günter Friers
Abteilung I/12
Stubenring 1
AT 1030 VIENNA
AUSTRIA
Phone: +43 1 71 100 8248
Fax: +43 1 71 100 8399
e-mail: guenter.friers@bmwfj.gv.at

CAI - Czech Accreditation Institute

Jiri Ruzicka
Olsanska 54/3
130 00 PRAGUE 3
CZECH REPUBLIC
Phone+420 272 096 222
Fax: +420 272 096 221
e-mail: ruzickaj@cai.cz

COFRAC - Comité Français d'Accréditation

Daniel Pierre
37, rue de Lyon
FR-75012 PARIS
FRANCE
Phone: +33 1 4468 8244
Fax: +33 1 4468 8221
e-mail: daniel.pierre@cofrac.fr

CYS-CYSAB - Cyprus Organization for the Promotion of Quality

Kyriakos Tsimillis
Ministry of Commerce, Industry and

Tourism
13-15 A. Araouzos Str.
1421 NICOSIA
CYPRUS
Phone: +357 22 409 309 or 357
22409310
Fax: +357 2 27 54103
e-mail: tsimilis@logos.cy.net

**DAKKS -- Deutsche Akkreditierungsstelle
GmbH**

Thomas Facklam
Spittelmarkt 10
10117 Berlin

GERMANY

Phone: +49 (0) 30 670 591-0
Fax: +49 (0) 30 670 591 - 90
e-mail : Kontakt@dakks.de

DANAK - Danish Accreditation

Vagn Andersen
Dyregaardsvej 5 B
DK-2740 SKOVLUNDE

DENMARK

Phone: +45 77 33 95 36
Fax: +45 77 33 95 01
e-mail: va@danak.dk

EAK - Estonian Accreditation Centre

Viktor Krutob
KIRIKU 2
10130 TALLINN

ESTONIA

Phone: +372 6 021 801
Fax: +372 6 021 806
e-mail: viktor@eak.ee

ENAC - Entidad Nacional de Acreditación

Beatriz Rivera
Serrano, 240, 7^o piso
ES-28016 MADRID

SPAIN

Phone: +34 91 457 3289
Fax: +34 91 458 6280
e-mail: enac@enac.es

ESYD - Hellenic Accreditation System

George Anastassopoulos
7 Thisseos str,
17676 Kallithea
GR - ATHENS

GREECE

Phone: +30 210 7204 502
Fax: +30 210 7204 501
e-mail: chairman@esyd.gr

FINAS - Finnish Accreditation Service

Leena Tikkanen
PO Box 9
(Tekniikantie 1)
FI -- 02151 ESPOO

FINLAND

Phone: +358 10 6054 300
Fax: +358 10 6054 399
e-mail: leena.tikkanen@finas.fi

HAA - Croatian Accreditation Agency

Biserka Bajzek Brezak
Ulica grada Vukovara 78
HR-10000 ZAGREB

REPUBLIC OF CROATIA

Phone: +385 1 610 6322
Fax: +385 1 610 9322
e-mail: biserka.bajzek@akreditacija.hr

**IARM -- The Accreditation Institute of the
former Yugoslav Republic of Macedonia**

Vesna Georgievska
Vasil Glavinov bb
Block X Mezzanine
MK-1000 Skopje
Phone: +389 (0)2 3296 685
Fax: +389 (0)2 3296 686
e-mail: vesna.georgievska@iarm.gov.mk

INAB - National Accreditation Board

Adrienne Duff
Wilton Park House
Wilton Place
IE- DUBLIN 2

IRELAND

Phone: +353 1 607 3251
Fax: +353 1 607 3109
e-mail: adrienne.duff@inab.ie

**IPAC -- Instituto Portugues de
Acreditacao,**

I.P.
Leopoldo Cortez
Rua António Gião, 2
2829-513 CAPARICA

PORTUGAL

Phone: +351 21 294 8201

Fax: +351 21 294 8202

e-mail: lcortez@ipac.pt

ISAC - Icelandic Board for Technical**Accreditation**

Einkaleyfastofan

Sigurlinni Sigurlinnason

Engjateigur 3

150 REYKJAVIK

ICELAND

Phone: +354 580 9400

Fax: +354 580 9401

e-mail: sigurlinni@accreditation.is

LA - Lithuanian National Accreditation**Bureau**

Irena Mikeliuniene

Algirdo str. 31

2006VILNIUS

LITHUANIA

Phone: +370 5 213 61 38

Fax: +370 5 213 61 53

e-mail: info@nab.lt

LATAK - Latvian National Accreditation**Bureau**

Martins Ozolins

157, Kr. Valdemara St.

LV-1013 RIGA

LATVIA

Phone: +371 67 37 3051

Fax: +371 67 36 2990

e-mail: latak@latak.gov.lv

NA - Norsk Akkreditering

Director General

Torleif M. Hauge

Fetveien 99

NO-2007 KJELLER

NORWAY

Phone: +47 64 84 86 00

Fax: +47 64 84 86 01

e-mail: tmh@akkreditert.no

National Accreditation Board - Malta**(NABMalta)**

Claudio Boffa

Second Floor, Evans Buildings,

Merchants Street,

Valleta VLT1179

Malta

MALTA

Phone: +356 21 255548 or +356 21

242420

Fax: +356 21 242406

e-mail: info@nabmalta.org.mt /

claudio.boffa@nabmalta.org.mt

NAT - Hungarian Accreditation Board

Rózsa Ring

Tétényi ut 82

H-1119 BUDAPEST

HUNGARY

Phone: +36 1 204 5432

Fax: +36 1 204 5075

e-mail: nat@nat.hu

**OLAS -- Office Luxembourgeois
d'Accréditation et de Surveillance**

Dominique Ferrand

34, avenue de la Porte Neuve

L-2227 LUXEMBURG

Phone: +352 46 97 46 41

Fax: +352 46 97 46 48

e-mail: Dominique.Ferrand@ilnas.etat.lu

PCA -- POLSKIE CENTRUM**AKREDYTACJI**

Eugeniusz W. Roguski

ul.Szczotkarska 42,

01-382 WARSZAWA

POLAND

phone: +48 22 355 70 00

fax: +48 22 355 70 18

e-mail: sekretariat@pca.gov.pl

**RENAR - Romanian Association for
Accreditation**

Fanel Iacobescu

18, Plugarilor Street

sector 4, code 040443

BUCHAREST

ROMANIA

Phone: +40 21 402 04 71

Fax: +40 21 402 04 89

e-mail: renar@renar.ro

RvA - Raad voor Accreditatie

Jan van der Poel
Postbus 2768
Mariaplaats 21 D
NL-3511 LK UTRECHT
NETHERLANDS
Phone: +31 30 23 94 500
Fax: +31 30 23 95 539
e-mail: jan.vander.poel@rva.nl

Slovenian Accreditation (SA)

Bostjan Godec
Ššmartinska 152
Si - 1000 LJUBLJANA
SLOVENIA
Phone: +386 1 547 32 50
Fax: +386 1 547 32 72
e-mail: bostjan.godec@gov.si

SAS - Swiss Accreditation Service

Hanspeter Ischi
State Secretariat for Economic Affairs
SECO
Lindenweg 50
CH-3003 BERN WABERN
SWITZERLAND
Phone: +41 31 32 33 511
Fax: +41 31 32 33 510
e-mail: hanspeter.ischi@sas.ch

SNAS - Slovak National Accreditation Service

Jozef Obernauer
PO Box 74, Karloveská 63
SK-840 00 BRATISLAVA
SLOVAKIA

Phone: +421 2 654 12 963
Fax: +421 2 654 21 365
e-mail: obernauer@snas.gov.sk

SWEDAC - Swedish Board for Accreditation and Conformity Assessment

Merih Malmqvist Nilsson
Box 878
SE-501 15 BORÅS
SWEDEN
Phone: +46 33 17 77 00
Fax: +46 33 10 13 92
e-mail: merih.malmqvist@swedac.se

TURKAK

Atakan Basturk
Esat Cad. No:41
06660 KUCUKESAT-ANKARA
TURKEY
Phone: +90 312 410 82 00
Fax: +90 312 419 8700
e-mail: abasturk@turkak.org.tr

UKAS - United Kingdom Accreditation Service

Jane Beaumont
21-47 High Street
Feltham
MIDDLESEX TW13 4UN
UNITED KINGDOM
Phone: +44 20 8917 8434
Fax: +44 20 8917 8500
e-mail: jane.beaumont@ukas.com

제4장 MRA 및 FTA 과제 및 향후 추진 방향

제1절 APEC TEL MRA 전개

방송통신기기 국가간 상호인정협정(MRA)의 전개는 크게 3가지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첫째는 정부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동시다발적인 자유무역협정(FTA)체결 전략과 보조를 맞추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의 FTA 협상시에 방송통신기기 분야의 협상에 적극 참여하여 전략적으로 MRA추진을 꺼려하고 있는 나라들과 MRA협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FTA 협상에서는 방송통신기기는 무역활성화의 전제에 해당하는 기술기준 등 무역장벽요소가 존재하기 때문에 FTA협정문에는 MRA추진을 위한 근거 조항을 삽입하고 그 근거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MRA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MRA방식은 현행 활성화되어 있고 우리나라도 많은 경험을 축적하고 있는 APEC TEL MRA 방식의 추진이 적합하다 할 수 있다. 하지만 FTA는 타결 기간이 MRA보다 장기 소요될 수 있는 점이 있는 반면 FTA의 법적 효력(강제성)이 MRA 법적 효력보다 강력한 장점이 있으며, APEC TEL MRA를 통한 MRA는 법적 강제성은 FTA보다 약하지만 MRA 협상 추진이 FTA보다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음을 고려한 탄력적인 협상 전략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두 번째는 장기간 추진하고 있는 MRA 추진 건에 대한 조속한 마무리가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기기 적합성평가 체제를 국제적 기준에 부합되도록 전과법을 개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IT 분야 적합성평가체제를 국제기준으로 개편하는 공인 인정기구 설치의 설치를 완료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그동안 장기간의 협의에도 실적이 없었던 미국, 캐나다와의 2단계 MRA, 싱가포르와의 1단계 MRA를 조속히 마무리 하여 MRA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다져야 한다. 장기적으론 시험·인증기관을 분리하여 개방을 확대함으로써 시험기관의 진입과 경쟁을 더욱 용이하게 하고 예산과 의사결정구조가 독립된 민간인증기관의 조기 설치도 검토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체결한 MRA로 무역이 활성화되고 국익에 도움이 되도록 체결 전에는 상대국 제도에 대한 철저한 파악과 체결 후에는 체결범위 확대 등 이행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MRA가 전시적 행정이지 않도록 국내 산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MRA 추진에 필요한 중장기적 기본전략이 마련되어 져야 한다. 구체적으로 한-미의 경우 한국은 미국 OSHA의 기술기준 중에서 전파연구소가 규율하고 있는 방송통신기기에 한정하여 현재 MRA단계의 적용범위를 전기안전까지 확대하자고 제안해야 할 것이며, 한-칠레 MRA(1단계)의 경우 2008년 체결 시험소 인정실적이 전무한 점에서 보듯이 적합성평가제도가 잘 정비되어 있지 않는국가와는 MRA체결에 앞서 상대국의 적합성평가제도나 기술기준의 정비 지원 등 교류 및 협력 방안 마련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는 MRA가 산업계의 요구 반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반드시 수행되어야 한다. 또한 MRA활성화를 위하여는 국내 제조업체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체결국의 기술기준을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시험기술의 교육 및 기기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 동시에 국내 업체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간 상호인정협정(MRA)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 수출업체에 외국의 인증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MRA의 조속한 추진을 위하여 전파연구소는 제43차 APEC TEL MRA회의 및 주요국과의 MRA 양자협상 결과를 토대로, KCLAP을 조속히 지정받아 아-태지역 시험기관 인정기구인 APLAC 정회원 가입을 연내에 완료하여 캐나다 및 싱가포르와의 MRA 체결을 조속히 마무리 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MRA 체결 사항에 대한 분석 및 조율과 일정협약에 차질이 없어야 하며 제 44차 회의시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MRA 효용에 대한 발표 및 사후관리 가이드라인 제정에 대비한 산·관·학계의 의견수렴과 대응방안이 마련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제2절 한-EU FTA 이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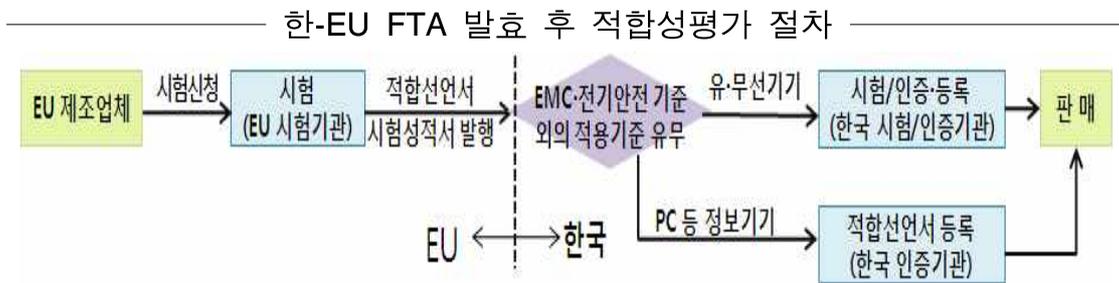
1. 경과조치 적용여부

- 우리측이 1.24일자로 적합등록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3년 경과기간 조항은 유명무실하게 됨

2. 한-EU FTA 주요 합의내용

- (적용범위) 전기안전/EMC 기술기준이 적용되는 방송통신기자재
 - ※ 관련규정 : 한-EU 협정문 부속서 2-나 1조, 부록 2-나-1
- (적합성평가절차) EU 제조업체가 한국으로 방송통신기자재 수출 시, EU 시험기관에서 시험과 전파연구소에 적합선언서 등록 후 판매 가능
 - 다만, 유·무선기기는 EMC·전기안전 시험 외에 유선 또는 무선에 관한 국내 시험 및 적합인증/등록 후 판매 가능

※ 관련규정 : 한-EU 협정문 부속서 2-나 3조나항(2)



3. FTA 이행방안

- EU에서 수입되는 방송통신기자재(원산지 : EU)에 대하여 EMC 및 전기안전분야의 적합성선언을 수용
- 국내대리인을 통하여 ekcc로 등록하며, 수수료 및 적합등록필증도 적합등록에 준용하여 처리
- CE report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EU측에서 한국에 통보한 시험기관에서 한국의 기준에 따라 시험한 성적서 결과로 적합 선언한 것을 인정하는 것임

○ 적합등록

- EMC/전기안전 기준만 적용시 : 적합선언서, 시험성적서 사본, 사용자 설명서 제출
- EMC/전기안전 기준외에 무선, 유선기준 추가 적용시 : EMC/전기안전에 대해서만 적합선언서, 시험성적서 사본, 사용자설명서 제출

○ 적합인증

- EMC/전기안전 시험성적서 대체 : 적합선언서, 시험성적서사본, 사용자 설명서로 대체하여 제출하고 EMC/전기안전 분야만 인증심사 생략

4. 한-EU FTA 결과 및 향후 방안

○ 한-EU FTA의 문제점

- 한-EU FTA는 기존의 국가간 상호인정협정 체결과는 다른 형태로 체결되었다. FTA 협정문상에 전기전자분야 부속서를 두어 적합성평가 상호인정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상호인정이라고는 하나, 우리나라 기업이 EU측에 수출하는 것에는 제도적인 변화 없이, EU제도의 근간인 공급자 적합선언 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결론지어진 것이다.
- 한-EU FTA 협상 당시, 우리나라 인증제도에도 공급자 적합선언을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면서 본 FTA를 협상한 것으로써, EU 측에 보다 간소한 절차로 국내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허용하는 반면, 많은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급자 적합선언을 도입하여 우리 제도를 보다 선진화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 그러나 한-EU FTA의 경우는 협정문상에 바로 적합성평가 분야 중 전자과적합성 및 전기안전에 대한 공급자적합선언을 수용하도록 명문화되어있어, 우리 측에 과히 유리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FTA 발효일정에 맞추어 시행을 해야 하는 관계로 우리 측에 유리할만한 사항에 대한 재협상의 여지가 없었던 것이다.

○ 향후 협상 추진방안

- MRA 협상은 국가간 대등한 관계에서 자국의 기업이 얻을 수 있는 시간적 비용적 절감 및 시장진입 선점을 위해 추진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기존에 다른 국가와 체결하였던 FTA 협정문상에 MRA 체결은 FTA 발효와는 별도로 추진하여 상호인정을 체결하도록 정해진 경우가 대부분이다.
- 따라서, 향후 체결될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과의 FTA 협상시에는 MRA에 대해서는 주무부처간에 별도로 협상하고 상호인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여 국내기업에 보다 유리한 점을 분석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갖고 추진하도록 협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 또한, 적합선언제도는 사전규제가 아닌 사후규제로서 소비자 보호 및 시장 질서를 유지하는 제도이므로, 적합선언제도 도입과 맞추어 사후관리제도 또한 보다 실질적으로 위반업체에게 패널티를 적용하도록 강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현재 보다 더욱 실효성 있는 사후관리제도 연구가 필요하며, 이를 통하여 방송통신기기 이용자들의 실질적인 보호는 물론 및 선진 제도의 안정적인 운용을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제5장 결론

본 연구에서는 APEC TEL MRA 동향 및 한-EU FTA의 방송통신기기 분야 이행방안을 살펴보았다. 특히, 방송통신분야 기술장벽의 효율적 제거 및 자유무역의 활성화 측면에서 현황 및 향후 추진방향을 제기하였다.

세계는 WTO 및 FTA에 의한 무역자유 촉진이라는 대의가 점점 더 자율적 선택이 아닌 강제 규범화 되어가고 있다. 특히 인증제도와 같은 비관세 분야도 무역장벽으로 간주되어 이의 해결을 위한 TBT 협정문이 채택되었다. 이로 말미암아 개별 국가가 독자적으로 운영하던 인증제도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제도의 흐름과 동등하게 통일시키고자 하는 논의는 더욱 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상의 연구를 종합해 볼 때 향후에 있을 외국과의 MRA/FTA 추진 시에는 다음 사항에 대한 세부 검토가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된다.

첫째, MRA/FTA 체결 기법에 대한 고려이다. FTA는 방송통신기기분야 뿐만 아니라 일국의 거의 모든 산업분야가 논의되는 협상의 장이기 때문에 방송통신기기 MRA 또한 전체 협상 일정 및 전략과 보조를 맞추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MRA는 다른 산업분야의 이익을 고려한 전략적 양보의 산업분야가 될 수도 있다. 또한 전체 FTA 이행일정에 무리하게 구속될 수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MRA를 위하여, FTA협상 시에는 MRA추진을 위한 근거조항만을 명시 한 후, MRA 협상은 별도의 협의일정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둘째는, 국익을 고려한 적극적인 MRA 추진전략의 마련이다. 그동안 추진해온 MRA는 1997년 이후 미국, 캐나다, 칠레, 베트남 등 4국과의 1단계와 EU와 체결한 MRA 2단계 수준의 FTA 1건 뿐이다. 이러한 불충분한 결과도 출된 주된 이유는 APEC TEL MRA 및 FTA 등의 국제회의 시, 상대국의 요청에만 의존하였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외국의 많은

선진국들은 자국 산업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MRA을 체결하고 있다. 아울러 후발 국가들도 적극적으로 MRA 체결을 준비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기술장벽 제거를 위한 국제적 흐름인 MRA의 확대를 위한 전략을 마련하여야 한다.

세째는, 정부의 동시 다발적인 FTA와 정책적 보조를 같이하여야 한다.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이미 외국과의 동시다발적으로 FTA를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시장 규모와 파급효과 큰 중국, 일본과도 동시에 FTA 협상을 준비 중에 있으며 방송통신기기 분야 또한 그 범위에 속해 있다. 하지만 방송통신기기 MRA는 미국, 캐나다, 싱가포르 등과 수년 동안 MRA를 협의 중에 있는 등 아직 실적이 미비하다. 따라서 한국은 기존에 추진해온 MRA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중국, 일본은 물론 호주, 뉴질랜드 등 FTA에 포함될 수 있는 MRA협상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네째는, 국제적 적합성평가체계의 조속한 구축이다. 앞에서 언급한 미국, 캐나다, 싱가포르 등과의 MRA협상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것은 국제적 기준의 적합성평가체계 마련이 지연되고 있는 것에도 기인한다. MRA는 객관적 기준에 근거한 상대국과의 상호인정임을 고려 할 때 다소 미진한 우리나라의 적합성 평가체계 보완은 조속히 마무리 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다섯째는, FTA/MRA 체결 효과 분석 및 문제점 보완이다. 한-EU FTA는 기존 한국에서는 시행하지 않았던 공급자자기적합선언(SDoC) 제도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이 제도는 공급자가 적합함을 스스로 선언하고 시장에 제품을 출시할 수 있으나, 사후검증을 통하여 부적합한 제품이 발견되면 이에 상응하는 제재가 이루어지는 제도이다. 따라서 신뢰를 근간으로 한 사회적 제도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FTA 이행내용을 수시로 점검하고 효과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보완하여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실무적 경험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주요 정책을 분석에 기초하여 향후 우리나라의 MRA 추진방향을 모색에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 제안된

내용이 국내 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반영되지는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가 MRA를 추진과정에 직면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으면 한다.

[참고문헌]

- [1] 전파연구소, 『MRA 추진대상국 선정 및 추진방향 검토』, 2006. 12.
- [2] 전파연구소, 『상호인정협정(MRA)의 이해(정보통신분야를 중심으로)』, 2006. 12.
- [3] 전파연구소, 『국가간 상호인정협정(MRA) 추진을 위한 정책 보고서(APEC New-MRA 추진경과 자료집)』, 2006. 5.
- [4] 전파연구소, 『국가간 상호인정협정 체결지원에 관한 연구』, 2010. 12.
- [5] 전파연구소, 『한·EU FTA 설명자료(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 평가 분야)』, 2011. 7.

APEC TEL MRA 동향 및
한 - EU FTA 이행방안 연구



140-848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41길 29
발행일: 2011. 10.
발행인: 임 차 식
발행처: 방송통신위원회 국립전파연구원
전화: 02) 710-6664

주 의

1. 이 연구보고서는 국립전파연구원에서 수행한 연구결과입니다.
2. 이 보고서의 내용을 인용하거나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국립전파연구원 연구결과임을 밝혀야 합니다.